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국, 고온 환경에서의 실외 작업 관련 규정 발표

지난 6월 29일,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서는 연합으로 「냉방조치 관리방법(防暑降溫措施管理辦法)」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법은 1960년도에 발표한 「냉방조치 집행방법」을 개정된 것으로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시간 제한, 고온수당 지급 등 여러 방면에서 규정을 더욱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동 방법은 주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1)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일 경우 실외작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2) 35도 이상에서 실외 작업하는 경우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3) 고온 작업으로 열사병이 발생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4) 고온으로 인한 조업중단, 조업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공제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지난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개정안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소가가 작은 사건에 대하여 1심 중심제를 적용하고, (2) 법원의 합의관할과 관련하여 반드시 분쟁과 현실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하여야 하고, (3) 법원은 이메일, 팩스 등 방식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고, (4) 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재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5) 이미 발효된 판결에 잘못이 있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발견한 제3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기존의 판결에 대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6)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외 행위에 대한 보전조치를 추가하였으며, (7) 악의적인 소송을 엄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8) 공익소송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중국, 교통운송 일부 업종 행정인허가 취소

지난 9월 23일, 국무원은 「제6회 행정인허가 항목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의하면 무려 314개의 행정인허가 항목이 취소되거나 조정됩니다. 그 중 교통운수영역과 관련하여서는 10여 개의 행정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예컨대, 외국국제도로운수경영자와 외국선박검사기구는 사전 인허가가 없이 직접 중국에 대표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 기존의 교통운수부서의 국내수로화물운수대리, 선박대리 인허가도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외상투자도로여객운수경영자, 국제선박운수기업, 국제선박대리기업 등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한 인허가 주무 부서는 기존의 성급 상무부서로부터 지방 상무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